

의안번호	2203424
의 퇴 인	임종득의원
회 답 일	2024.10.25.
추계번호	24D3337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2항(전담조직의 설치) 신설	국가는 관계기관 중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 해당 기관에게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제2항(전담조직의 설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테러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운영 경비 보조(안 제8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관계기관 중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이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,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는 지원의 기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고, 국가의 재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정해지므로 현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 - 참고로, 관계기관 전담기관의 예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테러대응팀은 총 40명으로 구성되고, 2024년 운영 예산은 7억임

[참고자료] 대테러 관계기관 및 전담조직 운영현황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

[참고자료] 대테러 관계기관 및 전담조직 운영현황

□ 대테러 관계기관 현황

- 대테러 활동 수행 시, 상시 긴밀하게 협조 및 협력 중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¹⁾ 관계기관은 총 20개이고, 법령²⁾에 따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직영기업 등도 대테러 관계기관에 모두 포함됨

□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현황³⁾

조직명	주요 업무
지역테러대책협의회	○ 시·도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
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	○ 공항 항만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
테러사건대책본부	○ 외교부장관, 국방부장관, 국토부장관,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설치·운영
현장지휘본부	○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 대응활동 총괄
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	○ 환경부장관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, 질병 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발생시 대책본부 지원
테러복구지원본부	○ 행정안전부 장관은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·구급·수습·복구활동 등에 관해 대책본부 지원
대테러특공대 등	○ 국방부장관,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·운영하여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등 임무 수행 (경찰청 산하 18개, 해경청 산하 5개, 국방부 산하 2개) 대테러특수임무대 20개,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13개
테러대응구조대	○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·구급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소방본부에 설치·운영 (소방청 산하 27개 구조대)
테러정보통합센터	○ 국정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
대테러합동조사팀	○ 국정원장은 국내외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 입수,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예방조치, 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·운영

- 1)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 제3조(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)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국가정보원장, 국무조정실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, 대통령경호처장, 관세청장, 경찰청장, 소방청장,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.
- 2)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2조(정의) 7. "관계기관"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 제2조(관계기관의 범위)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3)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 제11조(전담조직)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(이하 "전담조직"이라 한다)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(협의체를 포함한다)으로 한다.
 1.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. 공항·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. 테러사건대책본부 4. 현장지휘본부 5. 화생방 테러대응지원본부 6. 테러복구지원본부 7. 대테러특공대 8. 테러대응구조대 9. 테러정보통합센터 10. 대테러합동조사팀